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 부부공동명의 변경 안내문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계약하신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 2023.04.25)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 단지입니다.

단, 「주택법 시행령」 제73조4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LH 전매 동의하에 부부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부부공동명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일정에 차질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기간 내 부부공동명의 변경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오니 부부공동명의 변경이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와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해당기간에 방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공동명의 변경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절차)	접수처	구비서류
1. 방문예약	·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 예약 기간 : 2023.06.12(월) 12:00 ~ 2023.06.18(일) 23:59	
2. 증여계약서 작성 후 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051-970-4755)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동편 2층 토지정보과)	· 양도인(계약자) / 양수인(수증인) 공통 ① 증여계약서 3부(본인작성) -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② 공급계약서(아파트,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서) ③ 신분증(양도인/양수인) ④ 인감도장(양도인 / 양수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부산 강서구청에 방문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후 견본주택 방문	
3. 부부공동명의 변경 서류접수 사전예약 후 방문 (견본주택)	장소 ·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87-6번지)	▶ 양도인 / 양수인 공통 ① 검인 증여계약서(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검인 후) ② 공급계약서(아파트,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서) ③ 전매신청서(견본주택 양식 비치) ▶ 양도인(계약자) ①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본인' 발급분) - 수증인(배우자) 인적사항 기재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상세')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상세') ④ 신분증 ⑤ 인감도장 ※ 양도인은 반드시 본인 참석, 위임불가(불참 시 명의변경 불가) ▶ 양수인(배우자) ① 일반 인감증명서 2부('본인' 발급분) ②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상세') - 배우자(양수인) 분리세대일 경우 ③ 신분증 ④ 인감도장 ▶ 양수인 대리인 참석 시 ① 양수인 구비서류 일체 ②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용 1부('본인' 발급분) ③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및 일반 인감증명서 1부 ※ 서류 미비 시 부부공동명의 변경 접수 불가
	신청방법 · 홈페이지 사전예약 신청 후 방문 ※ 해당기간 내 미신청 시 공동명의 진행 불가합니다. · 진행일시 : 2023.06.15(목)~2023.06.19(월) / 5일간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4. LH서류심사 후 전매동의서 발급 (약 3~4주 소요) [당사 수령]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부로 부부공동명의 신청 서류 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전매 사유 심사 및 서류검토 후 전매동의서 발급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은 사업주체가 일괄 접수하는 것으로 승인완료 시까지 약 3~4주 이상 소요 예정입니다. ※ 부부공동명의 신청 접수 시 제출한 계약자의 공급계약서는 사업주체에서 보관하며 권리의무승계 완료 후 제출합니다.	
5. 권리의무 승계작성 및 공급계약서 수령 (견본주택)	· 공급계약서 권리의무 승계작성 ※ 부부공동명의 변경 신청 접수로부터 최종 전매승인까지는 약 1개월 가량 소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공동명의 변경 신청 시 양도인(계약자) 본인 필히 방문 - 대리인 불가(단, 양수인은 대리인 방문 가능)	
6. 증여세 신고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부부공동명의에 따른 세금에 대하여 신고, 납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필독)

※ 부부공동명의 변경은 현장 상황으로 인해 예약하신 시간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부부공동명의로만 변경 가능하며,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하거나 부모, 형제 등과의 공동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전매제한 기간에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후 다시 단독명의로 변경하시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본인' 발급분** 및 원본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 LH 전매동의 신청(LH제출)시 및 권리의무 승계 작성(당사 보관)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각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공동명의에 따른 세금에 대하여 신고, 납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변경 후 중도금 대출 실행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도인(계약자) 및 양수인(배우자) 중 1인이라도 중도금 대출 심사 부적격시 중도금 대출 실행 불가)

※ 부부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대출, 세금관련,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양도인(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당사에서는 세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금회 부부공동명의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추후 중도금 대출 실행 이후 변경시에는 대출 승계 절차 이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주)부산에코델타시티피에프비 외 2개사